

수원지방법원 2024. 11. 26 선고 2023가단557153(본소), 2024가단514238(반소) 판결
[용역비 · 계약금등 반환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(반소피고)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앤에이치

담당변호사 김재근

피고(반소원고)주식회사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름

담당변호사 김홍석, 김광수

변론 종결2024. 10. 15.

판결 선고2024. 11. 26.

주 문

1. 피고(반소원고)는 원고(반소피고)에게 48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. 12. 31.부터 2023. 8. 2.까지는 연 6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피고(반소원고)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(반소원고)가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본소 : 주문 제1항과 같다.

반소 : 원고(반소피고, 이하 '원고'라고만 한다)는 피고(반소원고, 이하 '피고'라고만 한다)에게 84,000,000원 및 그 중 36,000,000원에 대하여는 2022. 9. 22.부터, 나머지 48,000,000원에 대하여는 2022. 11. 11.부터 각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실내장식업 및 건축설계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, 피고는 음식료품 제조업 및 판매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.

나. 원고는 2022. 9. 21. 피고와 사이에 수지 C 카페(이하 '이 사건 카페'라 한다)의 인테리어 설계 용역계약(이하 '이 사건 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고, 총 계약금액은 120,000,000원(V.A.T. 별도)으로 계약금 36,000,000원은 위 계약 후 3일 이내에, 중도금 48,000,000원은 2022. 11. 10.자 기획 설계 PT 후에, 잔금 36,000,000원은 2022. 12. 20.자 설계도서 제출 후 10일 이내에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.

다.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22. 9. 22. 계약금 36,000,000원 및 2022. 11. 11. 중도금 48,000,000원 합계 84,000,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.

라. 원고는 2022. 12. 20. 최종 설계도서(이하 '이 사건 설계도서'라고 한다)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. 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당사자의 주장 요지

가. 원고 주장의 요지

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행을 모두 완료하였으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남은 잔금 36,000,000원 및 부가가치세 12,000,000원(= 120,000,000원 × 10%) 합계 48,000,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.

나. 피고 주장의 요지

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통해 실제로 이 사건 카페의 인테리어를 시공할 수 있어야 하나,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설계도서 중 파빌리온 구조물(이하 '이 사건 구조물'이라 한다)은 목재로 시공할 경우 비틀림이 발생하거나 파열될 우려가 많은 구조물이므로 현실적으로 시공이 불가능하다. 따라서 이 사건 설계도서는 현실적으로 시공할 수 없는 하자가 있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, 오히려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해제되어야 하고, 원고는 원상회복으로 피고에게 피고가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84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반환을 반소로써 구한다.

3.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설계도면을 제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잔금 36,000,000원과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12,000,000원 합계 48,000,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

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설계도서에 하자가 존재하므로,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고 주장하므로, 이 사건 설계도서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, 갑 제11호증, 을 제7호증을 포함하여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, 이 사건 설계도서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.

○ 피고는 이 사건 설계도서는 원자재의 내구성과 시공 상의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시공 및 설치할 업체가 없어 시공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, 피고의 이러한 주장만으로 이 사건 설계도서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. 나아가 피고와 시공업체 사이에 시공비용, 시공기간 등의 다른 요소로 인하여 시공업체들이 이 사건 설계도서대로의 시공 및 설치를 거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.

○ 피고가 제시한 설계검토서(을 제7호증)를 보면, 이 사건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할 경우의 문제점(갈라짐 등 변형 발생 가능성, 상당한 시간과 금액의 발생, 유지관리비 증대 등)을 제시하고

있으나, 시공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은 아니다.

○ 피고는 이 사건 설계도서의 이론상의 시공 유무가 아니라 공사비, 공사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현실적 시공 가능 유무가 하자 판단의 기준이라고 주장하나,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설계용역에 따라 설계도서를 제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을 뿐이고, 원고 주장의 공사비, 공사기간, 재료수급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야 한다는 조건은 존재하지 않는다. 오히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설계도서가 작성되기 이전에 여러 번 회의를 하면서 배치, 재료 등에 관한 충분한 논의를 거친 것으로 보인다.

○ 원고는 이 사건 구조물을 설계하기 위하여 건축사들의 검토를 받고, 이 사건 구조물에 사용될 애쉬(ASH)우드를 사용한 모듈 설치작업까지 진행한 반면, 피고는 시공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만 할 뿐 이 사건 설계도서의 하자를 증명하기 위한 감정신청을 철회하였다.

다. 소결

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8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잔금 지급기일 다음날인 2022. 12. 31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3. 8. 2.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4.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

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설계도서에 관한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설계상 오류로 인해 피고가 그 주장하는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따라서 피고의 반소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.

5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양순주